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63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윤준병 · 송옥주 · 문대림

전종덕 · 정진욱 · 임호선

곽상언 · 임오경 · 강준현

서영교 · 최혁진 · 서영석

김교홍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업 스트레스,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울 · 불안 · A 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 · 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단순한 정서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중단,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체적 건강 위주의 검사에 치중되어 있어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심리 · 정서적 불안과 이로 인한 학습 부진 등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분리

하여 진단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여 그 중요성을 제고하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인적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를 “질병의 유무 또는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한 건강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를 “할 때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u>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u>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u>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p> <p>1. ~ 3. (생 략) ③ ~ ⑥ (생 략)</p> <p><u><신 설></u></p>	<p>제7조(건강검사 등) ① ----- <u>질병의 유무 또는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한 건강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u> ----- ----- ----- -----. ② ----- <u>할 때에</u>-----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u>⑦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u></p>

	<p><u>에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7</u> <u>조에 따른 기초 학력진단검사를</u> <u>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u></p>
<u>⑦ (생 략)</u>	<u>⑧ (현행 제7항과 같음)</u>